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6호
2018. 1. 19.(금)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차 례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복나눔 기부자의 벽 운영 규정(훈령 제426호) ·····1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고시 제2018-5호) ·····4

공 고(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공고 제2018-54호) ·····5
-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 공고(공고 제2018-56호) ·····6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57호) ·····8
-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공고 제2018-58호) ·····9

입법예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59호) ···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61호)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62호) ···38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감사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3]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복나눔 기부자의 벽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8년 1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2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복나눔 기부자의 벽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따라 기부금(품)을 모집기관에 기탁하는 경우 그 뜻을 기리고 사회적명예감을 부여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의 벽”이란 기부금품을 기탁한 분 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3. “등재자”란 기부자벽에 올라간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장소) 기부자의 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공원 광장 무대 옆에 둔다.(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0)

제4(등재대상) 기부자의 벽에 등재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접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연100만원 이상 기탁한 사람 및 단체·기관으로 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집자

제5조(운영 등) ① 등재자의 선정주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선정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부자의 벽에는 최근 3년의 등재자를 올리고, 해당 연도에 두 번 이상 등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 번 등재자로 올린다.

제6조(등재철회) 구청장은 등재자가 등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와 등재자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등재를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수리 및 교체) 등재자는 1년에 1회 교체하고 수리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 외는 등재자 교체 시 수리 하는 것으로 하며 재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부서) 기부자의 벽 관리부서**는** 복지정책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발령 전에 기부자의 벽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따라 등재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덕구 발전을 위해 기부한 개인 및 단체에게 기부자의 벽에 등재하도록 하고, 그 뜻을 기리고 사회적명예감을 부여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 “기부자의 벽”에 대한 운영 및 대덕구민으로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재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6조까지).

○ “기부자의 벽”에 대한 수리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기부자의 벽”에 대한 관리부서를 정함(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8-5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 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중리동 242-10	홍도로99번길 65	2018.1..19.	건물신축	홍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9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비래동 557-12	비래서로10번길 76	2018.1..19.	건물신축	비래서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비래동 118-32	비래동로39번길 58	2018.1..19.	건물신축	비래동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장동 370-6	장동로 223-25	2018.1..19.	건물신축	행정구역명(장동)을반영	
문평동 48-32	문평서로18번길 77	2018.1..19.	건물신축	문평서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봉동 353-5	석봉로37번길 26	2018.1..19.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3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주소 폐지

폐 지 도 로 명 주 소	도 로 명 주 소 폐 지 일	도 로 명 주 소 폐 지 사 유	비 고
장동로 252	2018.1.19.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 - 5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금고은행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

금융기관	협력사업비 총액	비 고
㈜하나은행	금400,000,000원(금사억원)	

※ 금고 약정기간 : 2018. 1. 1. ~ 2021. 12. 31. (4년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 - 56호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설치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1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신청대상
   -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m미만 도로
   -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m이상 도로의 보도부(차도횡단부분 포함)

2. 신청기간 : 2018년 2월 9일까지
   (2018년 1회 대덕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예정일 : 2018년 2월중)

3.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조정신청서, 구간별 사진, 사업계획검토 시 참고자료, 각종 안전관리대책 각 1부

4.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건설과
   ※ 대전광역시에서 도로점용(굴착·복구)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중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반드시 도로관리시스템(https://vpn.daejeon.go.kr[유관기관], http://min,daejeon.go.kr/ungis_min[개인민원])으로도 중복 제출 바람

5. 신청요령 :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 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관리부서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번 심의에 상정이 불가하며, 개별적인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사업계획의 변경, 구민생활관련 민원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2018년도 4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공고 후 5월 중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는 당해 연도(2018년)만 인정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해당 허가는 무효임.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 연장 가능)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건설과(042-608-5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 - 57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번호	점용목적	굴착장소	시행자(점용자)	시설물종류	포장종류	굴착연장(m)	굴착면적(㎡)
2018-1호	통신케이블 이설	계	케이티 용전지점	통신관	아스팔트 보도블럭 모래	54.0	62.3
		오정동372-4번지 앞				26.0	28.7
		오정동 445-10번지 앞				28.0	33.6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 - 58호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평촌동 일원의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행하는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 방식)
다. 면 적 : 199,129㎡(산업시설 103,581, 지원시설 14,656, 기반시설 80,892)
라. 사업기간 : 2016. ~ 2020.
마. 시 행 자 :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바.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공휴일 제외)
나.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과

3. 주민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열람기간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서식 사용) 또는 전자문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042-270-6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5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란 조례 제정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내 식당운영, 휴게실 등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나.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6조).

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7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전화:042-608-6501, FAX:042-608-382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 양인석(☎ 042-608-65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사업소, 평생학습원, 동,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출산휴가, 질병·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문화탐방 및 한마음 연수 지원

3. 퇴직(정년·명예) 예정,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등 지원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

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의 안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공무원의 직무능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
   -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안 제5조(후생복지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 비용추계 전제 :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비용(a-b)		△ 1,672,160	△ 1,672,160	△ 1,672,160	△ 1,672,160	△ 1,672,160	△ 1,672,160
세입	소계(a)	-	-	-	-	-	-
	국·시비보조금						
	지 방 세						
	세외수입						
	기타						
세출	소계(b)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일반운영비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5.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2018년도 직원 복리후생 예산현황
   - 구내식당(인건비) : 5명 × 34,492,000원 = 172,460,000원
   - 건강검진비 : 919명 × 200,000원 × 50% = 91,900,000원
   - 국내·외연수 : 13명 × 1,700,000원 = 22,100,000원
   - 맞춤형복지 : 930명 × 1,490,000원 = 1,385,700,000원
6.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의존재원	소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협의사항 : 해당 없음
9. 작 성 자 : 총무과장 행정5급 전덕표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6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제6조까지).

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안 제24조까지).

라.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안 제31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2.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전화 : 042-608-6622, FAX : 042-608-3824, E-mail : dearks@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무과 담당자 황금순 (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은 기획감사실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급기준 : 6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3. 승인·결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요구

②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고충민원

제7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9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4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6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

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18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 요청

제20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8조에서 규정한 고충민

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2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이하 “법령”이라 한다)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3조(권리보호요청의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4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6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

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7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7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제도개선 과제 건의)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9조(기한의 연장신청 등)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1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

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

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 12. 2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 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

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6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 등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부터 안 제16조까지).

라.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

마. 지방세의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2.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전화 : 042-608-6622, FAX : 042-608-3824, E-mail : dearks@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무과 담당자 황금순 (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3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장 고충민원

제5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세무부서의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시정요구를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2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

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6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른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권리보호 요청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① 권리보호요청은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

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에 대한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사실관계의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9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6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3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24조(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그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결과(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민 원 내 용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예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부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요 청 사 유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기간연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